

머니투데이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주)머니투데이방송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용자의 피해 및 불만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체심의규정과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청자 불만 처리 대응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이 밖에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후보자 선정)

1.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 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방송 경력 10년 차 이상의 기자 또는 PD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제6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임 여부는 위원의 출석, 의견 제시, 위원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3.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달 정기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정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 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록은 작성하여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해촉)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방송사의 명예 훼손, 직무상 비밀 누설,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현 위원은 차기 위원회 구성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이 규정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에 공표한다.